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 21 선고 2021가단332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11.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508,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관한 지급명령은 2010. 11. 2.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61949 지급명령).

나. C의 아버지인 D이 2020. 11. 10. 사망하였는데(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C, E, F 등이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11. 10.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21.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C에 대한 위 지급명령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C이 채무초과상태라는 사실을 몰랐고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선주